

금모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금 모 래 초 등 학 교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금모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금모래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6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7 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신속히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3회 이상의 분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학교장과 해당 학부모는 교육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당일 수업시간 중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에앉아 있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가능하다는 교사 판단으로 자기 자리 복귀, 20분 내외)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 별도의 지정된 위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가능하다는 교사 판단으로 자기 자리 복귀, 20분 내외) 2. 서 있기 (야외활동 및 야외 수업 등의 경우, 20분 내외)	1호와 2호는 교사 판단에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으로 분리	관리자가 분리 및 지도, 단 관리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교사가 분리 및 지도	성찰문 및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가'에 따른 지도 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함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반복적인 미인정 지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방과후)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1,2,3호와 관련하여 교사의 추후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장소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성찰문 등 과제 부여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화, 촬영, 녹음, SNS, 게임 등)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또는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1 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 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5 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④ 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을 우선한다.

제 4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 생활

제 16 조 【기본품행 및 수업시간 준수】

- ① 학생은 기본예절과 기초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 ② 교사와 학생은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 17 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19 조 【교우관계】

- ①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20조 【학교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자 혹은 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031-488-2484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청 학교폭력신고 112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학교**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담당부서** 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 【동아리활동】 **방과후**(특기·적성) 교실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교실**(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 23 조 【여가활동】 비행 및 **학교폭력**(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정보화관,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24 조 【용의복장】 **본교에서 권장하는**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② 학생은 학습 등에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알맞은 복장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는다.
-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 ⑤ 가방은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자유로이 활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 25 조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 26 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업일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27 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구성원은 제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폐할 것을 안내한 후 철폐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폐할 수 있다.

제 29 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흥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무기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ライター 등 화기류), 향정신성의

약품 (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주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 30 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31 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7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절 교외 생활

제 32 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분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 33 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 통신

제 34 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 35 조 【휴대전화 이용 자율 실천 규칙】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Safety) 부문

- 1)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다.
- 2)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 3)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삭제한다.
- 4) 암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 5)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한다.
- 6)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 7)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올리지 않는다.
- 8)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지 않는다.

② 태도 (Attitude)

- 1) 학생은 일과 중에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한다.
- 3)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 4)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경우 휴대전화를 넣어둔다.
- 5) 바른 자세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 6) 잠자기 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7) 가정에서는 가족의 휴대전화를 함께 모아둔다.
- 8) 나만의 휴대전화를 사용 수칙 만든다.
- 9) 메시지 작성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린다.
- 10)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 1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 괴롭히지 않는다.
- 12) 사이버 상에서 문제 발생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제 5 장 학생생활지도

제 1 절 생활 지도

제 36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 37 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8 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 39 조 【체벌금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즐거운 학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체벌은 금지되며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제 40 조 【체벌 발생 시 조치】

(학생고충처리실)

- ①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학교 내 학생고충처리실을 운영한다.
- ② 학생고충처리실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단계별 조치)

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 ②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 ③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 ④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 41 조【생활지도 단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안 경중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1단계 : 조언, 주의
- ② 2단계 : 담임상담, 상담 전문가 및 관리자상담(학생, 학부모)
- ③ 3단계 : 훈육, 훈계
- ④ 4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제 42 조【생활지도 대상 행동】 생활지도 대상이 되는 학생 선정은 다음의 각 항을 기준으로 한다.

- ①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 ② 수업 시간 중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 ③ 학교생활 중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
- ④ 기본규칙 및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
- ⑤ 학습과제 불이행, 준비물 미지참 등 학습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
- ⑥ 학생 스스로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행동
- ⑦ 사이버범죄행동(무단촬영, 인터넷 게시 및 유포, 비방문자, 비방글 등)
- ⑧ 고의적인 학교 기물 및 개인 용품 파손·절도 행동
- ⑨ 기타 학생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제 43 조【생활지도 해당 행위】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실내에서 뛰거나 떠들, 줄서서 차례를 지키지 않음, 실내-실외화 구분하여 신지 않음, 침함부로 뺨음, 지각 및 수업이탈, 학습 과제를 하지 않음,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음, 불필요한 간식을 가지고 오음, 군것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림 등 기본적인 타인 배려를 하지 않거나 본인의 학습 수행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이버범죄행동(무단촬영, 인터넷 게시 및 유포, 비방문자, 비방글 등), 흡연, 주류, 음란물을 봄, 라이터, 성냥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음, 내기 게임을 함, 수업에 방해되는 언행, 학교 물건 파손, 학교에서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 등 본인의 인성 발달 측면에서 위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 돈 . 물건 뺏거나 훔침, 물건훼손, 친구 때리거나 괴롭힘, 집단폭행 . 집단 따돌림 등 본인의 인성 발달 측면에서 심각한 위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체 학생들에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제 6 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제 44 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과 겸임한다.

제 45 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④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제 지도
- ⑤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 46 조【구성 및 임기】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제 47 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④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⑤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 48 조 【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 49 조 【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특별교육 이수
 -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50 조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학교구성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② 학생 생활교육 시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학생 생활교육은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방법을 활용한다.

제 51 조 【학생생활교육의 방법】 학생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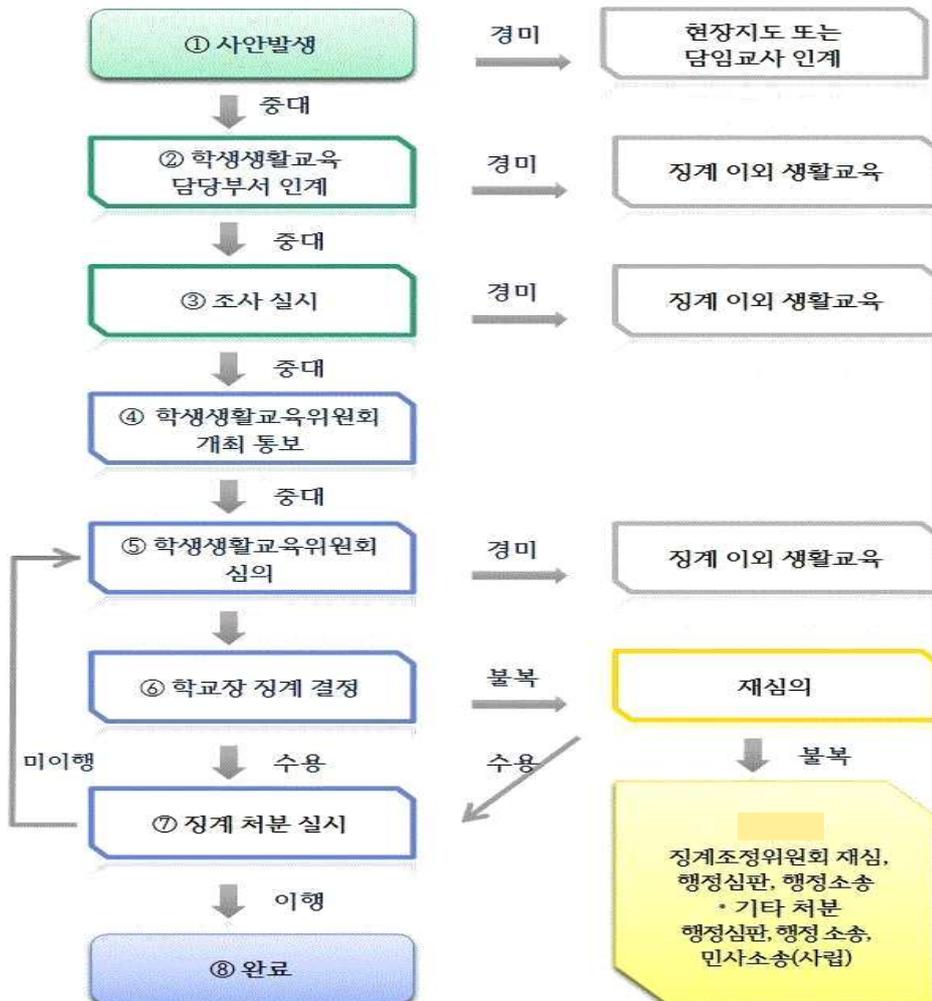
제 52조 【학생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학생생활 교육기준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하는 학생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9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0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1	교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교실 밖과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	○	○	○
12	소지금지물품을 휴대한 학생 ※소지금지물품은 29조 ①항 참고	○	○	○
12-1	휴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14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15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16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17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	○	○	○
17-1	수업시간 외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	○	○	○
1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8-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19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	○	○	○
2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1	동일 거으로 3회 이상 지시 불이행	○	○	○
2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2-1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위협, 물리적 폭행을 행사한 학생	○	○	○
22-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	○	○	○
2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3-1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4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5	기타 학생 생활 교육이 필요한 학생	○	○	○

제 53 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 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결정통지 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4 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소집될 때 사전에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 55 조 【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 56 조 【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7 조 【재심청구】

- ①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8 조 【재심의 절차】

단 계	내 용
이의신청 및 재심의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의 내용이 학교 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학교장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때 학교는 이의신청서에 ‘학교 내 재심의 청구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 필요
재심의 여부 논의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재심의 여부를 검토·결정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위원회 재심의 회부를 학교장 결재로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의견을 가급적 재청취 필요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당사자 통보 → 학생생활교육 시행

제 57 조 【학생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 에게 학생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된다.

제 58 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치결정을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 59 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7 장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 60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 절차’ 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1 조 【개정원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 62 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규정’ 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

제 63 조 【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본교 ‘학생자치회규 정’ 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 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2016년 5월 30일 개정되어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2019년 6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2020년 11월 3일 개정되어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2021년 10월 15일 개정되어 202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개정되어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